

한화포레나 부산당리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1-202-0543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거주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3.20.(금)	2026.03.30.(월)	2026.03.31.(화)	2026.04.01.(수)	2026.04.07(화)	2026.04.10.(금)~ 2026.04.14.(화)	2026.04.20.(월) ~2026.04.22(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dangni.forena.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2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3.30.(월)	2026.03.31.(화)	2026.04.01.(수)	2026.04.07(화)	2026.04.10.(금)~ 2026.04.14.(화)	2026.04.20.(월) ~2026.04.22(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603-1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04.07)로부터 6개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정비과 - 3094호(2026. 03. 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40-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4~34층, 5개동 총 543세대 중 일반분양 209세대

[특별공급 108세대(기관추천 20세대, 다자녀가구 20세대, 신혼부부 45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066	01	059.9714	59	59.9714	23.3537	83.3251	50.1807	133.5058	29.8303	145	14	14	33	4	13	78	67	6
	02	084.9995	84	84.9995	28.8010	113.8005	71.1227	184.9232	40.7404	56	6	6	12	1	5	30	26	6
	03	101.6522	101	101.6522	34.6091	136.2613	85.0567	221.3180	48.7814	7	0	0	0	0	0	0	7	0
	04	115.8350	115	115.8350	38.3525	154.1875	96.9241	251.1116	55.1989	1	0	0	0	0	0	0	1	0
	합 계									209	20	20	45	5	18	108	101	12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 분(약식표기)		59	84	101	115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1	0	0	4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0	0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0	0	3
	장애인	3	1	0	0	4
	중소기업 근로자	2	1	0	0	3
	외향선원 근로자	2	1	0	0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4	6	0	0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33	12	0	0	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1	0	0	5
생애최초 특별공급		13	5	0	0	18
합 계		78	30	0	0	10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						잔금 (35%)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26.09.15	27.03.15	27.07.15.	27.12.15	28.05.15	28.10.15	
59.9714	59	103동 1,2,3,4호 105동 1,2호	1층	3	183,432,400	315,567,600	-	499,000,000	5,000,000	19,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2층	6	185,638,000	319,362,000	-	505,000,000	5,000,000	20,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3-4층	12	187,843,600	323,156,400	-	511,000,000	5,000,000	20,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5-6층	12	191,519,600	329,480,400	-	521,000,000	5,000,000	21,05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82,350,000
			7-9층	14	195,563,200	336,436,800	-	532,000,000	5,000,000	21,6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86,200,000
			10-14층	26	199,606,800	343,393,200	-	543,000,000	5,000,000	22,15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90,050,000
			15-19층	23	203,650,400	350,349,600	-	554,000,000	5,000,000	22,7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93,900,000
			20-29층	49	208,429,200	358,570,800	-	567,000,000	5,000,000	23,35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98,450,000	
84.9995	84	101동 1,2,3,4호 102동 1,2호 104동 3,4호	1층	3	254,746,800	438,253,200	-	693,000,000	5,000,000	29,65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242,550,000
			2층	7	257,687,600	443,312,400	-	701,000,000	5,000,000	30,05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245,350,000
			3-4층	14	260,996,000	449,004,000	-	710,000,000	5,000,000	30,5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48,500,000
			5-6층	16	265,774,800	457,225,200	-	723,000,000	5,000,000	31,15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253,050,000
			7-9층	8	271,288,800	466,711,200	-	738,000,000	5,000,000	31,9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258,300,000
			15-19층	4	280,846,400	483,153,600	-	764,000,000	5,000,000	33,2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267,400,000
			20-29층	2	285,992,800	492,007,200	-	778,000,000	5,000,000	33,9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272,300,000
			30층 이상	2	289,301,200	497,698,800	-	787,000,000	5,000,000	34,35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275,450,000
101.6522	101	104동 2호	2층	1	320,179,400	500,746,000	50,074,600	871,000,000	10,000,000	33,550,000	87,100,000	87,100,000	87,100,000	87,100,000	87,100,000	87,100,000	304,850,000
			3-4층	2	324,223,000	507,070,000	50,707,000	882,000,000	10,000,000	34,1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308,700,000
			10-14층	1	344,441,000	538,690,000	53,869,000	937,000,000	10,000,000	36,85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327,950,000
			20-29층	2	359,880,400	562,836,000	56,283,600	979,000,000	10,000,000	38,950,000	97,900,000	97,900,000	97,900,000	97,900,000	97,900,000	97,900,000	342,650,000
			30층 이상	1	363,189,000	568,010,000	56,801,000	988,000,000	10,000,000	39,4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98,800,000	345,800,000
115.8350	115	104동 1호	30층 이상	1	415,020,800	649,072,000	64,907,200	1,129,000,000	20,000,000	36,45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395,150,000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 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및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음에 따라 2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 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으로 산출하였으며,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가전 등]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합계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 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 조건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계약금 5% 완납시 대출 실행가능)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 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 현황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외향선원 근로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4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①소득구분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3.20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5">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5">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8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주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3.20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data-bbox="318 932 2114 1091"> <thead>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body> </tabl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정 및 장소

구분	대상자		일시	신청장소
청약신청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6.03.30.(월) 09:00~17:30 * 현장접수 : 건본주택(10:00~14:00) - 현장접수는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청약홈 스마트폰앱 - 한화포레나 부산당리 건본주택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603-1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6.03.31.(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청약홈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6.04.01.(수) 09:00~17:30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 2순위)		2026.04.07.(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4.07.(화) ~ 2026.04.16.(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4.07.(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정 안내

구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	정당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2026.04.10.(금) ~ 2026.04.14.(화) (10:00~16:30)	한화포레나 부산당리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603-1번지)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홍보관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홈페이지(<https://dangni.forena.co.kr>)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 검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 동안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20.)이후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청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도장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복무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
해외근무 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장명령서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다자녀가 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신혼부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생애최초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노부모 부양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도장	대리인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서명 또는 날인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증명원 등)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전세피해 자 제출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신규취업자 : ①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근무기간 및 급여액 기재, 직인날인 필수) 계속근로자 :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④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속적인 프리랜서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신규 프리랜서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② 해당기간의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①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적인 프리랜서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세무서
	신규 프리랜서	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4.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 (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2024년 기준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건본주택 비치 ① 세무서/홈택스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류를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② 해당직장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 3.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상기 소득입증 관련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홈택스 발급 및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서류제출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및 자산입증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추가	주택	① 공동(개별)주택자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①,② 행정복지센터

		소유시		③ 위택스(www.wetax.go.kr)
		토지 소유지	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사용	
		주택 외 건축물 소유시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의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 • 집합건물 외 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②개별공시지가확인서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전체 화면 캡처) - 공동인증서 지참 후 건물주택에서 해당화면 구현 필요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자산가액 판정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20.)이후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자녀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일반공급 신청 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추가서류 (가점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차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26.04.20.(월) ~ 2026.04.22.(수) (10:00~16:30)	한화포레나 부산당리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603-1번지)	051-202-0543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천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07-0151-6561-03	당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한화

- 본 계좌로 납부된 분양대금은 표준사업약정 28조에 따라 결제관리계좌(경남은행 207-0151-6561-03)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니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을 위 지정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수납하며, 이외에 계약자가 현금, 수표 등으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5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분양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홈페이지 서식 참조 (6억 초과 주택에 한함)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분양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2022.12.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부정 당첨자로 관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최종 건축허가(변경포함)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준함.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02.28.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서 일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화포레나 부산당리 견본주택(051-202-0543) 으로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연락처 미통보에 따른 추첨일정 등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할 경우 당사 및 사업주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반드시 청약 신청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자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주택형별 예비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자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주택형별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 (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알선조건은 '중도금무이자'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에 60%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무이자'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중도금무이자' 조건은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 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기존 보증 이용건수 합산)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5% 이상 납부 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법률의 변경 및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조건 제한 및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 산됨)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 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 시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및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법에 따름.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적격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4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 예정)**

- 2021.02.02.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60일 이상 제공될 예정이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잔금을 실제 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59	무상
84	
101	
115	

■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확인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고, 공동주택 공급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위치에 따라 난간이 포함된 이중창이 설치되며, 외창은 유리난간 일체형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규격/수량/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단위:원/VAT 포함)

구분		세부내용		제조사/모델명	공급금액				
					59	84	101	115	
시스템 에어컨	일반형	선택1	2개소(거실 + 침실1)	LG	1,900,000				
		선택2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3,000,000	3,400,000	3,400,000	
		선택3	4개소(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4,900,000				
		선택4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6,400,000			
		선택5	6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7,400,000	7,800,000	
	고급형	선택1	2개소(거실 + 침실1)		2,000,000				
		선택2	3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3,200,000	3,600,000	3,500,000	
		선택3	4개소(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100,000				
		선택4	5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6,800,000			
		선택5	6개소(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7,700,000	8,200,000	
현관중문		선택1	수동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선택2	자동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가구		선택1	자녀방 불박이장(침실2)		1,800,000	1,800,000	1,900,000		
		선택2	자녀방 불박이장(침실3)		1,900,000	1,900,000	1,900,000		
		선택3	안방 불박이장		1,9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선택4	프리미엄 신발장 전시형 신발장			650,000	650,000	650,000	
프리미엄 바닥재		거실/주방 바닥타일 옵션(이태리산 포셀린 타일 바닥재)				2,000,000	2,200,000	2,400,000	2,500,000
프리미엄 주방		선택1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옵션		5,800,000	6,000,000	6,500,000	7,200,000	
		선택2	프리미엄 키친 소물가전&유리장식장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옵션 선택시 추가가능)		1,800,000				
		선택3	로봇청소기 하부 수납장 변경 옵션		300,000	300,000	300,000	300,000	
프리미엄 욕실		선택1	프리미엄 욕실(공용 옵션 분리) 인테리어 옵션		2,800,000	3,100,000	3,100,000	3,100,000	
		선택2	프리미엄 욕실(부부 옵션 분리) 인테리어 옵션(59)		3,100,000				
		선택3	프리미엄 욕실(부부 옵션 분리) 인테리어 옵션(84,101,115)			3,800,000	3,700,000	3,700,000	
프리미엄 월		선택1	거실, 복도 벽 시트판넬		1,700,000	1,700,000	1,700,000	2,800,000	
		선택2	거실, 복도 벽 시트판넬(59타입 프리미엄주방 선택2 추가시)		1,300,000				
프리미엄 조명		거실, 침실 조명 옵션				1,700,000	1,800,000	2,000,000	2,000,000
빌트인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SET [59/84 : 냉장고 SET + 측면 수납장] [101/115 : 냉장고 SET + 키큰장 설치]			삼성 (삼성_RR40C7995AP/RZ34C7 965AP/RQ34C7945AP)	6,200,000	6,000,000	5,200,000	5,300,000
빌트인 오븐		빌트인 오븐			삼성(NQ36A655CK)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식기세척기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DW60T7065SS)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인덕션 쿡탑		인덕션 3구 쿡탑 (고급)			삼성(NZ63B5056AK)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섀링팬		섀링팬 설치(리모컨 타입)				400,000	400,000	400,000	400,000
복합 환풍기		복합환풍기 휴젠트 설치(공용욕실, 부부욕실 2개소 설치)			힘펠(FHD3-C150P)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드레스룸 제습기		드레스룸내 빌트인 제습기 설치			힘펠(DHV-5PCCU)		1,600,000	1,600,000	1,600,000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LG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설치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실외기실 전동루버	에어컨 연동 자동 개폐형 실외기실 루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에서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및 냉매배관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적합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스탠드형), 침실(벽걸이형)에 냉매 골조 매립 배관 및 매립박스가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 시 모든 실의 냉매 골조 매립 배관 및 매립박스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복합 환풍기 유의사항

- 옵션 미선택 시, 기본 욕실현의 전기용량으로 반영되며, 복합 환풍기에 대한 전기 용량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 유의사항

- 드레스룸 제습기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가전기기 관련 유의사항

- 빌트인 가전 및 불박이 가구 선택 시 설치 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 주방 가전 선택 시 주방가구의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좌우대칭형 세대의 경우 옵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인덕션 설치 시에는 기본 제공되는 하이라이트는 시공 등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가전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김치냉장고의 도어 개폐방향은 변경될 수 없으니 유상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인덕션 제품 선택에 따라 기능과 디자인(색상)이 상이하니 옵션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동일한 크기의 여닫이 하부장 수납 가구가 제공됩니다.
- 유상옵션 로봇 청소기장 미선택 시 동일한 크기의 여닫이 하부장 수납 가구가 제공됩니다.
- 유상옵션 식기세척기 선택 시 가구도어 마감으로 시공되며 계약자가 별도로 패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트 선택 시 별도로 패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전시제품과 동일한 '코타 화이트' 마감 패널 적용)
- 유상옵션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트 선택 시 주방에 가까운 방향에 냉동고가 설치되며 입주 후 별도의 위치변경 불가하며, 자세한 위치는 MH 세대전시관을 참고바랍니다
- 유상옵션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트 미선택 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되며, 냉장고 사이즈에 따라 돌출 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트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트 미선택 시 제공되는 키 큰 장의 내부 형태 및 구성은 타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실링헨 유의사항

- 거실 실링헨은 제공되는 리모컨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해당 제품을 별도의 스위치 연결 및 사용 시 고장의 원인이 되며, 무상 A/S 기간에도 A/S 처리가 불가합니다.
- 거실 실링헨 옵션은 천장보강공사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 및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유의사항

- 드레스룸 제습기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옵션선택 시, 기존의 일반형 전열교환기를 대체하여 설치됩니다.

※ 프리미엄 바닥마감 (유럽산 타일) 유의사항

- 프리미엄 바닥타일의 실물은 모델하우스 세대 전시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타일 특유의 요철현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닙니다.

※ 프리미엄 조명 유의사항

- 프리미엄 조명 옵션 미 선택 시, 거실 스위치는 옵션 선택할 때와 다른 디자인의 스위치가 시공되며, 색온도 및 디밍 기능이 없습니다.
- 프리미엄 조명 옵션선택 시 설치되는 침실 조명의 직부등은 밝기조절, 색온도조절이 가능하며, 간접등은 On/Off (디밍불가)만 가능합니다.
- 프리미엄 조명 옵션선택 시 설치되는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조명은 평면 컨디션에 따라 적용 크기가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 내부 안정기박스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월 및 프리미엄 주방가구 유의사항

- 프리미엄 월 옵션 선택 시 벽판넬의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로봇청소기장 유상옵션 선택 시 본체와 스테이션이 수납 가능한 주방가구, 콘센트가 설치/시공되며, 로봇청소기 제품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프리미엄 주방가구 옵션선택에 따라 주방가구의 마감이 달라지며, 계약 시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미엄 주방가구 옵션 선택 시 플랩 상부장이 시공되며, 일부 공간 활용을 위해 여닫이 상부장이 설치됩니다.
- 프리미엄 주방가구 옵션 선택 시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 및 컬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 프리미엄 주방가구 옵션 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이 시공됩니다.
- 프리미엄 주방가구 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주방벽, 상판 세라믹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주방가구 옵션 선택 시 상부장, 장식장 하부 조명을 위한 안정기박스가 상부장 내 설치됩니다.
- 프리미엄 욕실 옵션 선택 시 공용/ 부부 욕실의 벽/ 바닥 타일, 수전, 도기류, 액세서리류, 샤워부스 프레임 디자인이 변경되며, 기본제공되는 마감재 및 수전, 도기류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프리미엄 욕실 옵션선택 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욕실 옵션선택 시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품질, 품귀, 성능개선 등 기타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욕실 선택시 시공되는 이태리산 벽, 바닥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유의사항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현관 가구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하부레일은 바닥(마루, 디딤석)과 단차가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유리사양은 단종 등의 사유로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계약금, 잔금)	우리은행	1005-704-878869	(주)한화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은 10%이며, 잔금은 90%입니다.
- 무통장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 하며, 환급이자는 없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봅니다. (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일정, 납부 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제(또는 해지) 하면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품목 및 계약 일정, 납부방법, 선택 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마감재 및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가전 선택 시공 시 기본 가전제품 비용 차감 부과 비용으로 차후 추가 기본사항에 대한 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콘센트, 조명, 스위치, 온도조절기의 설치 여부 및 위치, 회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 체결(전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시행수탁자 및 시행위탁자와 무관한 사항이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통사항	- 본 사업의 최초 주택건설사업승인일은 2021년 05월이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승인 시점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건본주택, 각종 홍보물 등은 공고 시점 기준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 도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추후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 사업승인조건의 이행, 각종 인증 진행(예비인증 및 본인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여건 반영, 관계기관 협의, 품질 개선, 오류 또는 오기 수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계약 시에는 이에 관한 제반 권리를 위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추후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방음벽 등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권(채광,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취향 및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전·후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외의 변경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수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절차에 요구되는 각종 도서 등은 요구자가 직접 준비해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규모 및 각종 면적(주거전용, 주거공용,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하였으나, 계약시에는 소수점 이하에서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 등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으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노선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굴,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 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 ③ 영리 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 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단지명,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석재, 목재 등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균질한 형태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방향, 색상, 베인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 하자 판단은 KS 기준을 따릅니다. (단, 천연자재는 그 특성상 갈라짐이나 불균일한 패턴의 발현과 색상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하자로 간주하지 않음.) - 공장생산 자재 (타일, PET, 시트 등)의 경우, 일정한 형태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설치 방향, 색상, 베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기관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 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 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주체와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계약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 저하 발생 시 "계약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건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토목 옹벽 및 건축 옹벽 디자인과 마감재, 녹화계획 높이 등은, 실제 시공 시 기능 및 성능개선, 주변 실제 현황,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및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라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설치 된 공공보행통로는 당 아파트 입주민 및 인근 주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개설된 시설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는 본 단지내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주변여건	- 본 단지의 대지경계 외부에 위치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당 기반시설의 개발계획이 취소되거나 구체적인 사항(도로 폭 등)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주변 산지의 절·성토 작업 또는 옹벽 등 각종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도로표지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 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인근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기반시설 조성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로 신설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도로의 상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 등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배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인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사항입니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 배치는 부산광역시 학교 군으로 학교 배정 및 계획은 부산시교육청 관할로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매도인 및 시공사가 정할 수 없음. (다만, 관할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치/ 동선/ 외부공간	- 다음 요인으로 인해 세대 간 일조권, 환경권(소음, 진동, 눈부심 등),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해 및 접근성 등 거주환경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높이, 폭, 디자인, 이격거리, 공법 등 세부사항은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지붕 및 옥탑 설치물과의 인접 [조경(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 설비, 연도, 소방설비 등]

	② 옥외 동선 관련 설치물과의 인접 [옥외 계단, 옥외 엘리베이터, 계단실, 단지 내 도로, 소방차 전용구역, 난간 등] ③ 조경 관련 설치물과의 인접 [파고라, 놀이터, 티하우스 벤치, 주민운동시설, 팻놀이터 등] ④ 단차처리를 위한 설치물과의 인접 [토목옹벽, 건축옹벽, 석축, 사면처리 등] ⑤ 기타 지상 설치물과의 인접 [주차장 출입구,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비용 급·배기구, DRY AREA(환기구), 필로티, 맨홀, 트렌치, 맨홀, 가스 정압기, 계량기, 탐라이트 등] ⑥ 동호수별 위치, 향, 층, 동간거리의 차이 ⑦ 부대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과의 거리의 차이 - 단지 내 비상 차로 및 포장 구간 중 일부는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차 전용구역으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 주체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정압기 설치 없이 공급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공급 시점의 여건에 따라 부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인접 세대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별도의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계량기함 및 맨홀이 부지 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경사진 대지의 특성상 인접 도로와 단지 외부공간(데크) 간 레벨차가 발생하며 일부 지하층 외벽이 노출됩니다. 각 부 단차는 토목옹벽, 건축옹벽, 사면처리 등으로 처리되며 세부사항(공법, 범위, 형태, 마감 등)은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부 단차는 토목옹벽, 건축옹벽, 사면처리 등으로 처리되며 세부사항(공법, 범위, 형태, 마감 등)은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 도로 레벨계획의 변경,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 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 홍보물(모형, CG 등) 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본 아파트 지상 1층 외부에 설치되며, 해당 폐기물과 쓰레기의 수거 또한 본 아파트 지상 1층 동 외부를 통하여 수거됩니다.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 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음식물 차량 등에 의한 차량 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 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 공간(녹지 등)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 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비상 차량(소방차)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 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 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주동	- 필로티 인접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환경권(소음)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동 조합 및 층수에 따라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사양(속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동 조합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 1대당 이용 세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 및 기계실에 인접한 세대는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공용부(승강기홀, 계단실 등)에 설치되는 창호의 수량 및 세부 사양(크기, 재질 등)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 창호와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계단실에 개폐 창은 부분적으로 설치되고, 각 동마다 설치 개소가 상이하오니, 계약 시 설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리난간 설치로 인해 이삿짐 운반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항공장애등, 태양광 발전 설비, 연도설비, 소방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것들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세대	- 창호의 방충망은 외부에 면한 창 중 개폐 창에 설치되며 창짝 중 한쪽의 창짝에만 설치됩니다. (실외기 그릴 창은 고정식 방충망 설치) - 거실, 안방(확장형의 경우 발코니 외창)에 한해 고정식 유리 난간이 설치되며 높이, 디자인 등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리 난간이 설치됨에 따라 이삿짐 이동 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가구 및 마감재 시공으로 인해 일부 면적은 바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 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욕실장 측면 및 후면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② 일반 가구 상부와 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③ 주방가구와 접한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④ 주방가구 상부와 하부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의 냉장고 설치공간,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공간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점의 표준적인 국산제품의 크기를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대형가전 또는 입주 시점의 신제품의 경우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각 타입의 설치공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가구, 가전의 경우 반입 동선 및 도어 사이즈의 제한으로 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각 타입의 반입 동선 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문형 냉장고의 경우 냉장고가 주방 방향으로 일부 돌출되거나 냉장고와 가구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싱크대 주방가구 상판은 상판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으며 현장오차로 인해 주방가구 상판이 냉장고장 돌출라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 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 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 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외 온도 차가 크거나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 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주기적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및 발코니는 미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 배관, 배수 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현관창고 바닥에는 타일이 설치됩니다. - 다용도실은 세탁기 수전 외 별도 손빨래용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탁기, 건조기의 제품 유형 및 설치방법에 따라 다용도실 창호 사용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대피공간(도면상 "하향식 피난 구역"으로 표기)이 설치되며 해당 실 바닥 및 천장에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단, 1층 세대의 경우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필로티 상부세대의 경우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 또는 실 벽체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유상옵션 항목 중 실외기 전동루버 자동개폐장치의 타입, 형태, 색상, 위치 등 세부사항은 본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 벽체는 경량 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 및 못 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및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실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 배치 등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등 수납공간 계획은 현장여건반영, 사용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세부 사양 및 디자인(개폐 방향, 창호 분할, 손잡이 타입 및 위치, 형태, 컬러, 치수, 상세, 부속철물 등)은 현장 여건 및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커튼박스 깊이는 배관 설치 등을 사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내부에 상부 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욕실 및 다용도실 문턱은 물 넘침 방지를 위해 바닥보다 높게 설치되나 개폐 시 욕실화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 치수와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다용도실,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실의 바닥 타일 나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쿡탑은 3구 하이라이트로 시공되며 주방 내부로 가스 배관은 인입되지 않습니다. - 거실 부분의 천장고는 2.3m (우물천장 부분 2.4m)이며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실, 다용도실 등의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천장고가 상이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단열재 등의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거실 우물천장 부분의 천장고가 동일 평형의 다른 세대 대비 낮을 수 있습니다. - 옥상 등에 세대용 통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환경권(냄새, 소음, 진동, 해충, 미관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내부 균일한 마감을 위해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수납가구의 하드웨어는 본공사시 동등사양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내부 별도의 전동빨래건조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기/ 기계/ 설비	-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되며, 세대 내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 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전기분전반)은 침실 내부, 다용도실 등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신단자함은 세대 타입, 침실 내부, 팬트리 등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신단자함, 세대(또는 호실) 분전반, 전기 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전기통신 관련 마감재의 제품 제원,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맞음선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월 패드의 카메라는 미적용되었으며, 세대 간 영상통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세대 급수 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 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 - 레인지후드 환기 배관 및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레인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 내에 자동식 소화기 설치에 따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조명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 소등 스위치의 기능에는 승강기 호출 기능(하행만 가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 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 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 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혹은 인근 세대의 전열교환기, 에어컨, 보일러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배기가스, 백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에는 배관,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의 골조매립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벽체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침실 골조매립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벽면에(벽걸이 타입에어컨 기준)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 시 모든 실의 골조매립 냉매배관 및 매립박스, 콘센트는 미시공됩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및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열교환기 및 환기덕트는 세대 내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로인해 미관저해 및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건식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가구장 하부, 샤워부스, 욕조 하부 등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 - 부부 욕실의 경우 세면대 하부에 세면대 배수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 상부층의 급수·급탕 분배기가 매립 혹은 노출 형태로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 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수량, 사양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 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장, 화장대 등 가구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각 세대 옥탑 층에는 세대용 통기관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미관 저해, 소음 및 진동,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별 단차로 인해 옥탑 층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	- 주민운동시설은 골프연습장 1개소, 스크린골프 1개소, G.X룸 1개소, 피트니스 센터 1개소로 총 4개소가 설치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현장 여건 반영, 관계기관 협의, 품질 개선, 오류 또는 오기 수정 등을 목적으로 용도, 구획, 위치, 면적, 창호, 마감재 등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마감재는 단종 등에 따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기본 마감 외 시설운동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 후에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운영·관리 방안을 결정하고, 입주자의 부담으로 직접 운영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로의 인수·인계 전까지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분 내 일부 공간은 일정 기간(입주 개시 후 약 30개월, 단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동안 입주 지원센터, A/S 센터 등으로 운영되며 이에 대한 임대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부대시설의 위치는 가급적 단지 중심부에 배치하였으나 동별로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골프 연습장의 타석 수 및 배치는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은 스크린이 아닌 일반 연습 타석으로 설치 예정임)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지상층 외부에 설치되어 쓰레기 및 수거 차량에 의한 환경권(소음, 진동, 눈부심, 악취, 해충, 분진, 미관 저해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이동,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지상층 필로티 내(105동 제외-외부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인접 세대는 환경권(소음, 진동, 눈부심, 냄새, 해충, 분진, 미관 저해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지상, 지하 및 옥외공간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의 설비(실외기, 배선, 배관, 조명 등)공간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계약자가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옥상 등에 각종 설비(실외기 등)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이로 인한 환경권(소음, 진동, 기류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하 3개 층에 총 799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 10대 총 809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합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였으나 대지형태, 주동배치 등에 따라 동별 인접 주차구획 분포, 출입 동선 길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동의 위치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특정 층에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는 단지 서측 1개소(지하 1층으로 진입), 단지 동측 1개소(지하 1층으로 진입) 총 2개소입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지하 1층 2.7m(차량 통행로에 한함) 이상 확보되어 있고 그 외 층은 2.3m(차량 통행로에 한함) 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지하 주차장 통행 폭은 6m 이상입니다.(각 층 층고에 따라 일부 택배 차량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계획(동선, 주차구획 배치, 전기차 충전구획 배치 등)은 현장 여건 반영,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등의 공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상부에 별도 천장 마감재 없이 각종 설비, 배선, 배관이 노출 설치됩니다. 또한 데크슬라브 설치부위에는 금속판재가 노출될 수 있으며 적용 부위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급속-1대, 완속-32대가 지하 주차장 1층에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타입,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획에 일반 차량 주차, 충전 이외의 점유, 충전방해 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시공사와 협의된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의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자를 통한 전기차 충전전력공급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동 출입 동선,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의 운전석/보조석 문과 기둥이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경	- 단지 내 조경(식재, 녹지, 보도 및 차도 포장, 휴게 및 운동시설물, 수경 시설물, 기타 조경부대시설물, 조명 등)의 세부사항(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재료, 색채, 선형, 형태, 패턴, 수종 등) 및 동선계획은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과 관련하여 입주자 인계 이후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식재로 인해 일조권, 환경권(소음, 벌레 등),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차 및 경사 인접 구간 일부는 실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비상 차량 동선,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경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관	- 홍보용 이미지 등에 표시된 주변 단지 및 건물, 시설물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작성 시와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광고물(모형/조감도/각종 CG/인쇄물/팸플릿 등)에 표현된 입면 디자인(색채/줄눈) 및 외장 마감, 조경계획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 결과,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데크, 옹벽, 외부 건축 구조물 등 외관 디자인(형태/마감재/색채/장식물/사인물/커튼월록 등)은 인허가 과정, 경미한 설계변경, 자재수급, 디자인 개선, 시공상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 사유(품질 저하)가 아닌 이상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따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면 구성요소(마감재/패턴/색상/사인물/장식물/캐노피 등)는 브랜딩 향상을 위해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더라도 품질이나 성능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색채계획, 커튼월록 부착, 경관 구조물 설치, 경관조명 설치, 석재디자인(패턴/마감재/높이/면적 등), 마감재 입면 돌출은 단지 경관 및 주변 레벨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일부는 석재마감이 적용되나 코어 및 일부 구간은 도장 마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및 데크 입면의 주 동선 구간은 석재 또는 건식마감이 적용되나 그 외 구간은 도장 및 뿔칠이 적용됩니다. 저층부 동 출입구의 형태, 캐노피 위치, 적용 면적은 추후 조경 동선계획 및소방안전매트 위치, 하향식 피난 구조물, 배관라인 간섭, 보행자 폭 확보, 사인물 부착위치 등에 의해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는 추후 구조검토 및 보차안전 공간확보 계획에 의해 구조물의 높이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외벽, 발코니 등에는 외부 장식물, 조명, 싸인, 별도 마감재(커튼월록 등)가 부착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인접 세대는 환경권(소음/눈부심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가스배관 및 보일러 연도가 외벽에 노출되어 설치됨에 따라 미관저해, 백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식용 옥탑 구조물의 높이는 구조물 안전검토 및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높이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일부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최종 설치위치 및 높이는 발전효율, 구조물 안전강화 등으로 인해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및 단지 내에 설치되는 난간은 실제 시공 시 상세하게 계획되며, 분양 모형 및 CG 등에 표현된 난간은 개략적인 이미지로 단순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 문주 및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과 인접한 일부 동 및 세대는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 통신/ IoT관련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케이블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 맨홀, 통신 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신실(TPS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통신 세대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 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홈넷 서버 운용을 위한 전용 IP 비용은 준공 후 6개월까지 지원함. 그 후 발생하는(인터넷 업체 변경 포함) 전용 IP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무인 택배 및 주차 관제 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차 관제 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사(ex: 태양광 발전 공사)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주)한화 건설부문 모바일 전용 APP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준공 3년 이후, 홈넷 및 무인 경비공사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요하는 유료로 전환되며, “을”은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전용 APP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무료 서비스 내용)될 수 있습니다. ((주)한화 건설부문 전용 APP 미적용 시 홈넷사 제공 APP 적용) - 견본주택 영상의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 2 및 방송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 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 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3동 지붕, 104동 지붕, 지하2층 101동 헬룸, 지하2층 104동 전기실 ※ GPS, Bluetooth, 위치 권한, 원패스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 'ON'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소 요구사양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phone 6s 이상 ※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
기타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수목 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 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 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E/V 홀 등의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재이용시설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의 이용에 따른 전기료 및 유지관리 비용이 공공요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 시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계획된 경관조명 계획은 공사 중 현장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및 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 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동 및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지 내 개설된 도로는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확보된 도로로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옥상, 옥탑, 지하 등에 적용된 방수공법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 품질 및 유지관리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전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 공용부 마감, 색채, 자재, 공법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 품질 및 유지관리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전동의 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 「주택법」에 의거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건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승강기의 인승,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최종사업승인 도서에 따라 시공되며, 사업승인 도면상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최종 사용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는 실 시공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 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므로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 결과, 각종 심의 결과(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 점검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별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창호, 가구, 바닥재,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석재, 걸레받이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 접합부, 패턴 등 은 본 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 걸이, 수건걸이, 코너 선반, 수건 선반 등), 욕실 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석재 및 타일 등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현관창고, 아트월, 욕실, 발코니, 현관, 다용도실 등)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59, 84타입만 설치되며, 건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발코니 변화 여부, 가구 배치, 실면적등 건본주택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벽 색채, 마감, 줄눈, 옥상 구조물, 그 외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승인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으로 실제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 시 냉방 전용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 선택품목으로 제공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 패드, 전자식 스위치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실제 색상, 패턴이 상이할 수 있고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단위세대 UNIT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 등은 연출을 위한 전시용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및 조명, 바닥 배수구, 욕실 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각 실에는 전열교환기 디퓨저가 설치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각 실에 전열교환기 디퓨저가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전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손 끼임 방지장치의 사양 등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홍보물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에 이용된 단지 이미지, 단지모형, 세대모형, CG, 도면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미지에 표현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벽 색채, 마감, 줄눈, 옥상 구조물, 그 외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실제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 (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 (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가전, 소품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 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세대 VR 자료는 공간감, 마감재 느낌 등은 개인별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정확한 사전방문행사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4월 예정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내진능력 (MIM등급)
VII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 구획 높이
2.7m	택배차량 진입공간 2.7m / 그 외 2.3m	2.1m

*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무인택배함이 지하층에 위치하는 경우 택배차량 진입공간에 한해 차로구간 유효높이 2.7m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외 주차장 차로 높이는 2.3m / 주차공간 유효높이는 2.1m로 시공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상에 별도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스쿨버스 스테이션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경로당 1개소, 골프연습장(4타석) 1개소, 스크린골프 1개소, G.X룸 1개소, 피트니스 센터 1개소, 공동육아시설 1개소, 독서실(남,여) 각1개소, 작은 도서관 1개소, 주민회의실 1개소, 관리사무소 1개소, 어린이놀이터 2개소, 주민운동시설(야외) 1개소, 근린생활시설 등

- 단지 내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전체는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홈페이지 내 단지배치도 CG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적용됨.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사용승인 도면(임시사용승인도면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제7조제2항제3호)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22026-101-0000200 호	82,701,45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분양자(매도인)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아파트 하자보수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책임은 하자보증 기간 내에서 보수의 책임을 지며, 아파트 하자판정 및 보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본 공고문에 제시된 인증서는 예비인증서로 본인증 진행 시 등급, 항목별 점수 등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현장 여건,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의무 등급의 변화가 없는 선에서 유사한 성능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당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2. 신 청 자: 당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40-3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공기를 차단성능	★★★★
2. 중량공격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실 관벽수 소음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외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법성	★
3. 유리충진성 전동부분	★
4. 유리충진성 공통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채굴 자함	해당없음
3. 토양과 침식방해 적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친환경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9. 온수·냉수 보온을 위한 축열시스템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제품(EPP)의 사용	★★★★
11. 자립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15. 자립소 자재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우수처리수 이용	★★★★
18. 빗물수거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8월 17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10mm×297mm(배장지 120g/㎡)

녹색 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당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건 축 주	당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40-3번지 일원
층 수	지하 3층, 지상 34층 / 543세대
면 적	91,049.4230 ㎡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설 계 자	해영달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1-0850-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1.8.17.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량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8월 17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국제인증 받은 건축물은 인증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지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공통 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당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증번호	21-주-제-11-0250
준공연도	20200302	평가자	총평표
주 소	부산 사하구 당리동 340-3	인증기관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층 수	지하3층 / 지상34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91,049.4230(㎡)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결과 종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영달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
에너지 자소비량 건축성능	0	에너지 효율성	1	48	23.0
에너지 소비량 건축성능	57.7	에너지 효율성	1	56	
에너지 소비량 건축성능	57.7	에너지 효율성	1	64	
에너지 소비량 건축성능	57.7	에너지 효율성	1	72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난방	14.8	38.2	8.1
냉열	30.7	35.4	7.2
조명	12.2	12.2	5.7
합계	57.7	90.1	23.0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조명, 조류 등에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조명, 조류,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재질, 가열, 운송, 조류, 환기, 공기 냉각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 []설치된 [V]설치()되어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지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별 다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8월 17일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통신·소방
회사명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일씨엠	(주)한국나이스기술단
감리금액	2,380,576,000	654,861,510	1,080,2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회사명	당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한화 건설부문
법인등록번호	184971-0006670	110111-0002959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33, 성진골든빌리지 201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 현장 및 건본주택 위치 안내

	건본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603-1					
	현장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40-3					
	운영 시간	10:00~18:00					
	분양 문의	051-202-0543					
	주요 일정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기간	계약기간
		2026.03.30.(월)	2026.03.31.(화)	2026.04.01.(수)	2026.04.07(화)	2026.04.10.(금) 2026.04.14.(화)	2026.04.20.(월) 2026.04.22(수)
	홈페이지	https://dangni.forena.co.kr/					